

휴업 요청 당부

- 본 현은, 현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여 지금까지 주말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야간에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 번화가로의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과 더불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 하지만 현재의 감염 동향으로 미루어볼 때, 지금까지의 외출 자제 요청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접촉 횟수를 철저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감염 확산을 한시 빨리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민 한분 한분의 행동이 가족을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내 지역,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 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현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법 제 24 조 제 9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의 내용과 같이 사업자 여러분께 휴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요청 개요】

< 구역 > 후쿠오카현 전역

< 기간 > 2020년 4월 14일(화요일) ~ 5월 6일(수요일)

< 휴업 요청 대상 시설 >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1 조에 규정된 시설 중,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

※상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용 중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기인하지 않고 시설의 이용 중지 협력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휴업 등 협력 요청(별첨)

-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는 현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구역

후쿠오카현 전역

2 기간

2020년 4월 14일(화)~5월 6일(수)

3 협력 요청 내용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1 조에 규정된 시설 중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특별조치법 제 24 조 제 9 항에 의거하여 시설의 이용 중지 협력을 요청함.

또한,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 중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법에 기인하지 않고 시설의 이용 중지 협력을 의뢰할 수 있음.

4 휴업 요청 대상 시설

(1) 특별조치법에 의한 협력 요청 대상 시설

시설 종류	내 용
유흥 시설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바, 독방식 특수 욕탕, 누드 스튜디오, 옛보기 극장, 스트립 극장, DVD 방, 넷 카페, 만화 카페, 노래방, 사격장, 경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발매소, 조정 경기 장외 발매소, 라이브 하우스 등
대학, 학습 학원 등	대학, 전수 학교, 각종 학교 등의 교육 시설, 자동차 학원, 학습 학원 등 ※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하는 장소에 한함
학교(상기 목록 제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 학교, 특별지원 학교 ※ 단, 의료 종사자나 한부모가정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지낼 곳을 확보하기 위해 종일반과 같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요청
운동 시설, 오락 시설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등의 운동 시설 마작소, 파친코, 오락실 등의 오락 시설
극장 등	극장, 관람소, 영화관
모임·전시 시설	박물관, 미술관 또는 도서관, 호텔 또는 여관(모임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한함) ※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하는 장소에 한함
상업 시설	생필품의 소매 관계 외의 점포, 생활 필수 서비스 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점포 ※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하는 장소에 한함

(2) 특별조치법에 기인하지 않은 협력 의뢰 대상 시설(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m²이하인 하기 시설)

시설 종류	내 용
대학, 학습 학원 등	대학, 전수학교, 각종 학교 등의 교육 시설, 자동차 학원, 학습 학원 등 ※ 단,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m ² 이하인 경우,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한 후에 영업
모임 전시 시설	박물관, 미술관 또는 도서관, 호텔 또는 여관(모임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한함)
상업 시설	생필품의 소매 관계 외의 점포, 생활 필수 서비스 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점포 ※ 단,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m ² 이하인 경우,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한 후에 영업

5 휴업 요청 대상 외 시설

시설 종류	내 용
의료 시설	병원, 진료소, 약국 등
사회 복지 시설 등	탁아소, 방과 후 아동 클럽, 방과 후 데이 서비스 ※ 가정에서 대응이 가능한 이용자에게는 이용 자제를 요청하여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위탁을 축소하여 실시 노인, 장애인 등 특히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주거와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시설
생필품 판매 시설	도매 시장, 식료품 매장, 백화점·홈 센터·슈퍼마켓 등의 생필품 매장, 편의점 등
식사 제공 시설	음식점(이자카야 포함), 카페 등(배달·테이크 아웃 포함) ※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의 영업을 요청하고, 주류 제공은 저녁 7 시까지로 하도록 요청(배달·테이크 아웃 제외)
주택, 숙박 시설	호텔 또는 여관(모임용으로 제공하는 부분 제외),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등
대중교통 등	버스, 택시, 렌터카, 철도, 선박, 항공기, 물류 서비스(택배 등) 등
공장 등	공장, 작업장 등
금융기관·관공서 등	은행, 증권 거래소, 증권 회사, 보험, 관공서, 사무소 등 ※ 자택근무 추진을 한층 더 강하게 요청
기타	방송국, 장례식장, 대중목욕탕, 전당포, 동물 병원, 미용실, 클리닝·세탁소, 쓰레기 처리 관계 등

※ 상기 시설은 별도의 표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을 참고하여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표】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

목적	구체적인 대응 예시
발열자 등의 시설 입장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의 체온, 몸 상태를 확인하여 체온이 37.5 도 이상이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종업원의 출근을 정지 · 방문객의 체온, 몸 상태를 확인하여 체온이 37.5 도 이상이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방문객의 입장을 제한
3 미(밀폐, 밀집, 밀접)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이용자의 입장 제한, 줄을 만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나 앞사람과의 간격 확보(약 2m 간격 확보) · 환기(가능하면 양방향의 창문을 동시에 열 것) · 사람이 밀집한 회의의 중지(대면 회의를 피하고 전화 회의나 화상 회의를 이용)
비말 감염, 접촉 감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기침 예절, 손 씻기를 철저히 이행 · 방문객 입장 시의 손 소독, 기침 예절, 손 씻기를 철저히 이행 · 점포 사무실 내의 정기적인 소독
이동 시의 감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워 대책(시차출근, 자가용 차·자전거·도보 출근 추진) · 종업원의 출근 인원 제한(재택근무 등의 실시) · 출장 중지(전화 회의 및 화상 회의를 활용), 방문객 수의 제한